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40 발의연월일: 2025. 3. 4.

발 의 자:조정훈・인요한・김미애

정성국 • 김용태 • 김대식

최수진 · 김장겸 · 이인선

박충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 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안전대책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 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8).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항제2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출입문, 복도, 계단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②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영상정보처리기기</u> 의 설치에	2.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		
관한 사항	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		
	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		
	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u>수 있다.</u>		